

고성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공동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의안번호 제3007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5. 10. 2.

고성군수

나. 회부일자: 2025. 10. 2.

다. 상정·의결일자: 2025. 10. 20.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설명자: 문화예술과장 최다원)

가. 제정이유

가야고분군 세계유산의 통합보존·관리 및 활용과 추가 등재를 위하여 재단법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을 설립하고, 그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목적(안 제1조)
- 2) 법인격 및 설립(안 제2조)
- 3) 재단 기구의 구성 등(안 제3조)
- 4) 재단 추진 사업 및 사업위탁(안 제4조~제5조)
- 5) 재단의 재산 및 운영비 등 지원(안 제6조~제7조)
- 6) 공유재산의 대부 및 결산(안 제8조~제9조)
- 7) 공무원의 파견 및 운영규정(안 제10조~제11조)

다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: 「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」, 「민법」, 「지방공무원법」
- 2) 예산조치: 2026년 당초예산 확보 예정

3) 합 의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 - 개선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34485(2025. 9. 5.)호]

4) 기 타

- 가) 입법예고: 고성군공고 제2025-1390호
 - 예고기간: 2025. 8. 20.~2025. 9. 9.(20일간)
 - 예고결과: 의견없음
- 나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다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라) 신·구조문대비표: 해당사항 없음
- 마) 비용추계서: 붙임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허수은)

-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된 후 등재 유산의 통합보존·관리와 사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인 재단설립 등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규정하는 것으로
- 「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」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특히, 연속유산의 특성을 반영하여 10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세계유산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
 - 조례 제명, 조문 구성과 체계 및 용어를 검토한 결과 입법례에 특별히 위배 됨이 없다고 판단됨

▶ 주요 검토 내용

- (안 제2조~제5조)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의 법적 지위와 설립 방식, 재단의 의사결정 구조와 재단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재정지원의 정당성도 함께 확보
- (안 제6조~10조) 재단의 기본재산(설립자산) 출처와 재정 기반 마련하고 공유재산 무상 사용 등 허용 법적 요건과 공무원 파견 및 보호조치를 명시
- (예산규모) 2026년 금170,000,000원 분담금(운영비 지원)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5. 10. 20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